

제안운영규정

2008.06.04.제정 2011.04.18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 2018.07.01.일부개정
2020.06.01.일부개정 2024.06.20.일부개정

<미래전략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업무전반에 관한 대학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제안의 종류)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.

- ② “자유제안”이라 함은 제안자가 임의로 선정한 과제에 관한 제안을 말한다.
③ “지정제안”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.

제 3 조 (제안의 대상) 제안의 대상은 본 대학교 발전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업무능률 향상 및 업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
2.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
3. 학사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에 관한 사항
5.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

제 4 조 (제안자의 자격) 본 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. (개정 2022.6.24.)

제 5 조 (제안의 모집) 제안의 모집은 분기별로 모집하며, 지정제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. (개정 2022.6.24.)

제 6 조 (제안의 관장부서) 제안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하며, 기획처장은 이에 관련된 운영 및 지도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
제 7 조 (제안의 절차)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 구분없이 제안자는 정해진 제안서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 2024.6.20.)

②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등급을 결정한다. (개정 2024.6.20.)

③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제안 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8 조 (제안심사위원회 설치) 제출된 제안의 심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

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학생 제안 심사시 학생 위원 2명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6.1., 2022.6.24.)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위원은 사무처장, RISE전략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교직원 및 학생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0.6.1., 2020.11.1., 2021.6.1., 2022.6.24., 2023.9.1.)
- ③ 위원장은 제안 관리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.
- ④ 제안심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.

제 9조 (심사기준) ① 제출된 제안은 대학기여도, 효율성,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. (개정 2020.6.1. 2024.6.20.)

- ② 제1항의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해당 관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(포상 및 특전)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그 밖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삭제 <2024.6.20.>

[별지 제2호 서식] 삭제 <2020.6.1.>

[별지 제3호 서식] 삭제 <2024.6.20.>